

별정통신사업관련 기본정책

류 필 계 정보통신부 과장

별정통신사업 도입 배경

- '97. 2 타결된 WTO 기본통신협상을 이행하고 기술발전등 정보통신사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
 -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콜백서비스 등 틈새형 정보통신서비스가 등장하여 기존 통신서비스 시장에 영향

별정통신사업 영역과 전망

음성재판매

- 음성재판매의 유형
 - 공전공접속에 의한 음성재판매 (Switched Reseller)
 - 최소 한 단축에 교환기를 보유하고, 전송설비는 임차
 - 공중망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하며, 과금체계를 보유
 - 교환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공중망사업자의 대량이용할인제도를 이용하여 음성서비스를

단순재판매 (Switchless Reseller)

- 재과금사업자(Rebiller) : 공중망사업자로부터 과금자료를 받아 자신의 가입자에게 재과금하는 사업자로서, 과금체계를 보유하며 접속료는 지불하지 않음
- 호집중사업자(Aggregator) : 다수의 지역에 산재한 고객들을 할인요금 대상의 단일고객으로 묶음으로써 사업을 하며, 접속료를 지불하지 않고 과금체계도 보유하지 않음
 - 무선통신서비스 재판매

- 셀룰러, PCS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기지국, 교환국, 기간망 등)를 보유하지 않고, 설비보유 사업자로부터 일정규모의 통화시간(Airtime)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재판매시장 규모

- '98년 1,660억원에서 2001년에는 2,836억원으로 전망
- 전체 시외전화의 6%, '99년 이후 국제전화의 3% 점유 예상

(단위 : 억원)

구 분	'98	'99	2000	2001
시 외	1,660	1,835	2,006	2,171
국 제	-	482	554	665
합 계	1,660	2,317	2,561	2,836

* 자 료 : 통신개발연구원

○ 기대효과

- 텐세수요 충족으로 국민의 통신편의 증진, 시외·국제전화 시장의 경쟁 활성화, 교환설비 등 수요확대, 대외개방에 앞서 국내사업자의 재판매시장 선점 효과

인터넷폰

○ 인터넷폰의 유형

- 인터넷폰은 공·전(인터넷망)·공 접속에 의한 서비스로 초기에는 PC-to-PC 형태로 부가통신서비스였으나, 기술발전으로 PC-to-Phone, Phone-to-Phone 형태의 음성전화 서비스도 가능

※ PC-to-Phone 방식과, Phone-to-Phone 방식은 공중전화망과 접속되는 쪽에서 게이트웨이(Gateway) 설치 필요

○ 시장규모

- '98년 182억원에서 2001년 2,098억원으로 성장 전망
- 저렴한 요금을 기반으로 2001년에는 국제전화 및 시외전화 시장의 약 4%를 점유할 것임

〈 국내시장전망 〉

(단위 : 억원)

구 분	'98	'99	2000	2001
시 외	122	304	728	1,346
국 제	60	160	400	752
합 계	182	464	1,128	2,098

콜백서비스

- 국가간 국제전화요금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불완료호신호방식(Uncompleted Call Signaling)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

○ 시장규모

- '99년 531억원으로 전체 국제전화의 3%를 차지하나 인터넷폰 및 재판매가 활성화되면 점차 감소하여 2001년 430억원 전망

〈 국내시장전망 〉

(단위 : 억원)

연 도	'99	2000	2001
매출액	531	478	430

○ 기대효과

- 국제전화요금 수준이 높은 나라를 대상으로 한 우리 통신사업자의 해외수익 창출 및 관련기술 습득 가능

구내통신

- 일정한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구내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

- 구내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나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유인이 없는 것이 문제

○ 시장규모

- 국내의 구내통신장비 시장은 '96년 3,621억원 규모로 연평균 75%이상 고성장 지속

〈 국내 구내통신장비 시장규모 〉

(단위 : 억원)

	'92	'93	'94	'95	'96	'97 (추정치)	연평균 성장률
	330	800	1,520	2,174	3,621	5,423	75%

별정통신사업관련 기본정책 방향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97. 8. 28 공포) 내용

현 행

- 설비 및 역무를 기준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

구 분	설비유무	제공역무
기간통신사업자	설비보유	기간통신역무
부가통신사업자	설비임차	기간통신역무이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

- 현행법의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진입 금지
 - 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제공 :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등
 - 설비를 임차하지 않고 기간통신역무 제공 : 국제콜백
 - 구내에 전기통신설비 설치하고 전기통신역무 제공 : 구내통신

개정내용

- 현행법상 진입금지된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등 통신사업의 진입금지를 철폐하고 일정요건만 갖추어서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별정통신사업 신설
 - 전기통신사업구분 : 기간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 별정통신사업의 정의(제4조제3항 : 신설)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

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구내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 별정통신사업의 분류

- 음성재판매(서비스재판매 및 무선재판매 포함), 인터넷폰, 국제콜백, 구내통신사업 등

- 진입요건(제19조 : 신설)

- 별정통신사업은 등록으로 하되 초기에 통신시장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보호 등 일정 등록요건을 부과

- 사업시기 : '98. 1. 1부터 허용(부칙 제1조)

- 지분제한

- 서비스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일인 지분제한은 적용치 않음

별정통신사업관련 향후 정책방향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설정 방향

- 통신사업 진입제도로서 등록은 사업계획서등을 평가하는 허가와 달리 사전설정된 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 진입의 자율성을 높인 제도임

- 엄격한 등록요건을 설정하는 경우 기존의 통신시장 구도 및 체계가 유지되는 장점은 있으나 진입희망자중 소수의 참여만 가능하여 등록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날 수 있고

- 완화된 등록요건을 설정하는 경우 다수 사업자의 참여로 등록제 도입취지에 부합되나 사업자의 지나친 난립으로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문제야기 가능성이 많음

- 따라서 등록요건은 등록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이용자에게 질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함

재판매의 분류

○ 분류의 필요성

- 재판매사업은 사업형태 및 이용기술이 다양하므로 이를 반영한 등록요건의 설정이 필요

○ 재판매사업의 분류 방안

- 당초 재판매사업을 구체적 사업형태에 따라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국제콜백, 호집중 및 재과금사업자등으로 세분하는 방안과
- 재판매사업을 각 사업의 공통점을 기준을 전기통신설비 보유사업자와 미보유사업자로 대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 향후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사업형태등장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설비보유여부에 따른 구분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재판매사업의 구체적 분류

- 설비보유 사업자
 - 재판매사업중 교환설비등 장관이 고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임차하여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국제콜백 등이 해당됨
- 설비미보유 사업자
 - 재판매사업중 설비보유사업을 제외한 사업자로 호집중사업자, 재과금사업자, 무선재판매 등이 해당됨.

구체적 등록요건

○ 재정적 능력

- 별정통신사업 수행을 위한 자본금 요건 총족

구 분	등 록 기 준
제1호의 사업(설비보유재판매)	자본금 30억원 이상
제2호의 사업(설비미보유재판매)	자본금 3억원 이상
제3호의 사업(구내통신사업)	자본금 5억원 이상

○ 기술적 능력

- 기술방식

전기통신설비 및 역무제공방식이 전기통신망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

- 기술인력

구 分	등 록 기 준
제1호의 사업 (설비보유재판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의 기술계 자격자 3인, 기능계 자격자 2인이상
제2호의 사업 (설비미보유재판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의 기술계 자격자 1인이상
제3호의 사업 (구내통신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의 기술계 자격자 1인, 기능계 자격자 1인이상

○ 이용자 보호계획

- 1인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 설치
- 이용자보호관련 이용약관의 제정
 -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명시
 - 역무제공 불가능시 보상조치 및 대책 명시
-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보호대책 준수

향후 추진방향

○ 입법예고 결과등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필요한 입법절차를 거쳐 '97. 12월에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을 공포하여 '98. 1. 1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 '98. 1. 1일부터 별정통신사업이 시작될 경우 기술개발 및 시장확대로 관련사업이 발전하고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선택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